

방 송 통 신 위 원 회

심 의 · 의 결

안건번호 제2017 - 48 - 294호

안 건 명 통신사 영업점 등 24개사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피 심 인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이사

의 결 일 2017. 12. 21.

주 문

1.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유

I. 기초 사실

피심인은 영리를 목적으로 이동통신서비스를 판매하는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개인정보 처리 위탁을 받은 사업자로, 피심인의 최근 3년간 매출액은 다음과 같다.

〈 피심인 일반 현황 〉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평 균
매출액(단위 : 백만원)				

※ 자료 출처 : 피심인이 제출한 자료

II. 사실조사 결과

1. 조사대상

방송통신위원회는 개인정보 취약분야인 통신사 영업점을 대상으로 정보통신망법 위반 여부에 대한 피심인의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기획조사(2017.4.20.)하였고,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2. 행위사실

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은 이동통신서비스에 가입한 이용자의 주민등록증 사본(건)과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가입신청서(건)를 업무용 컴퓨터에 보관하고 파기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2017. 7. 10.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사업자 시정조치 (안) 사전 통지' 공문을 통하여 이 사건에 대한 피심인의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피심인은 2017. 7. 24. 의견을 제출하였다.

III. 위법성 판단

1. 관련법 규정

가.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단서 또는 제24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이 끝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3조제1항 단서는 “다만, 제22조제1항에 따른 이용자의 동의를 받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히 수집 대상 개인정보로 허용된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으로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정보통신망법 제64조제3항은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이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공무원에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 해당 법 위반 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 위법성 판단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한 행위

피심인이 수집 목적을 달성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즉시 파기하지 않은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1항(개인정보의 파기 중 목적을 달성한 경우)을 위반하였다.

〈참고〉 피심인의 위반사항

사업자 명	위반 내용	법령 근거		
		법률	시행령	세부내용(고시 등)
	미파기	§29①1호		이용목적을 달성한 개인정보(신분증 사본 및 인터넷 가입신청서 등)를 파기하지 않고, 컴퓨터에 보관한 행위

IV. 시정조치 명령

1. 시정명령

가. 피심인은 개인정보를 보관, 관리하는 자로서 이용자의 동의를 받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을 달성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복구·재생할 수 없도록 파기하여야 한다.

2. 시정명령 이행결과의 보고

피심인은 제1항의 시정명령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고, 대표자를 비롯하여 개인정보보호책임자 및 개인정보취급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그 실시결과를 포함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처분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수사기관 조사결과 이첩 등

피심인이 정보통신망법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제1항제1호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73조제1의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그러나 피심인은 ▲사업규모가 소기업에 해당하는 점,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한 점, ▲미파기한 개인정보 건수가 7건으로 경미한 점 등을 감안하여 이번
한해 시정명령만을 부과하고 향후 위반행위 적발 시 엄정하게 처리한다.

V. 결론

피심인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조제4항(시정명령)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이의제기 방법 및 기간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방송통신
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또는 관할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위 원 장 이 효 성



부위원장 허 욱



위 원 김 석 진



위 원 표 철 수



위 원 고 삼 석

